03 issue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형사처벌 판례 분석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김명준 부장

등장 배경

2018년 12월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제한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올해 9월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업장에서 2년도 되지 않아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무게 2톤의 스크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이유는 산안법 위반 시 처벌이 낮기 때문이다.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 유기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매년 3~5건에 불과하며, 실형기간은 평균 9.3개월에 그쳤다. 대부분 피고인에게 재산형(벌금)이 선고되었는데 그 벌금액은 평균 5백만 원 정도였다.[1] 산안법 위반 사건의 책임자에게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은 산안법의 벌칙규정에 처벌의 하한선이 없고,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에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형량구간이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안법 위반의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산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약 93%가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불이익보다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미 몇 번의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전과가 없거나 초범보다 이익 추구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될 수 있다. 즉 전과 보유 비율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산안법 제14차 개정(2006. 3. 24.)에서 신설된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징역형을 기준으로 보면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와 큰 차이가 없다. 두 범죄는 징역형의 상한에서 2년의 차이가 날 뿐이고, 특히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실무에서는 법관이 행하는 양형이 징역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징역형을'7년 이하'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1) KBS 일하다 죽는 사람들.."산업재해는 기업범죄"(KBS, 2020. 9. 16.).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징역형 상한을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의 상한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인다고 노동자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법관은 법정형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안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한을 두는 방식(예를 들면, 1년 이상 7년 이하 등)을 도입했다면 산안법 위반 범죄에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도입한 개정으로 평가되었을 수 있다.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가 도입되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법정형과 선고형의 큰 차이가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으로 벌칙규정이 강화되었지만,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난과 함께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2007년에 제정된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정형과 선고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최근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주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산안법 개정으로 안전·보건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준은 높였지만 현실에서의 처벌은 여전히 낮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에 대한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 법정형 제개정 현황

구 분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의 법정형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
1981.12.31. 제정	제44조(벌칙):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X
1990.01.13. 개정	제67조(벌칙):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X
1996.12.31. 개정	제67조(벌칙):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X
2006.03.24. 개정	제67조(벌칙):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제66조의2(벌칙):징역 7년↓, 벌금 1억 원↓
2019.01.15. 개정	제168조(벌칙):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제167조(벌칙) 제1항: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제2항: 제1항의 죄로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표 2 대법원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8월	6월~1년	8월~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6월	4월~10월	8월~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10월	8월~2년	1년~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10월	6월~1년 6월	10월~3년 6월

표 3 특별양형 및 일반양형의 감경 및 가중 요소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	행 위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	행위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중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 검토[2)]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은 세 가지(법정형, 선고형, 양형기준)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산안법 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별 법정형은 입법자가 불법의 정도를 추상적으로 고찰하여 규정해 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형의 적성성 여부는 당해 법정형이 헌법상의 기준인 과잉금지원칙 등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 한 쉽게 적정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현실에서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산안법 제167조 제1항이 고의의 기본범죄(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이고 과실의 중한 결과(근로자 사망)와 연결되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안전·보건조치미이행은 고의범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게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3)]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현행 제38조)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산안법(제38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4)]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의 구성요건인 '근로자'를 당해 사업주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축소하여 해석함으로써,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외주업체 근로자 등)가 사망하여도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행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현장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업주 등은 해당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진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 93-98면.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 7834 판결 참조.
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 7834 판결 참조.

2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형의 적정성 검토

산안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실제 선고형은 형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위하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가. 법정형의 중대성이나 중한 선고형은 그 자체가 잠재적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하력이 떨어지는 선고형은, 특히 해당 수범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대응하는 기업 관행을 보면 낮은 선고형에 비해 편익이 크다면 그 편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태를 보면, 산안법 위반사건의 대부분은 약식명령의 청구사건이고, 선고되는 대부분의 형벌은 벌금형이다. 또한, 산안법 위반사건으로 공소장에 의하여 제기된 사건들의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 등 유기자유형을 선고한 예는 매년 5건 이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산안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3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정성 검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과실치사상범죄군에 포함되어 있지만, 산안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안법 제38조(안전조치) 또는 제39조(보건조치)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만 적용된다.[5] 즉,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제는 공소장에 의하여 제기된 사건들 중 법관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의하여 제기된 사건이라도 법관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 중 매년 5건 이하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현실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형기준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산안법 위반 사건은 '기업범죄'이고 '고의범'이라고 하면서도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권고 형량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죄 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2018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 참조.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 형사 판례 사례와 선고내용 분석

1 형사 판례 사례

1) 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고단6115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저압이고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전기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장소에 적절한 절연용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통신선로 가이설 작업을 하던 중 충전전로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로 2018. 7. 6. 14:4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고였다.

[선고 내용] 피고인 B(합자회사)와 A(현장소장)에게 각각 500만 원 벌금

2) 부산지방법원 2019. 4. 4.선고 2018고단 5912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 3. 27. 15:59경 투명 방음판 설치작업을 시공하면서 추락방지망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고정바 볼트 조립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약 10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 앉아 뒤로 이동하면서 가압 고정바 볼트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설계상 투명 방음판 미설치 구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27. 17:06경 장기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고였다.

[선고 내용] 피고인 A(대표이사) 400만 원 벌금, 피고인 B(공사실무자) 250만 원 벌금, 피고인 C(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실무책임자) 400만 원 벌금

3) 울산지방법원 2019.3.14. 선고 2018고단3682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사업주는 건물 등을 해체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2018.6.28. 15:29경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하여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으로 벽체의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약 2.7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천장 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를 연가양홍, 혈흉,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선고 내용] 징역 10개월
(양형이유: 과실 정도가 중하고 안전모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4) 대구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9고단149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3층 원룸 신축공사를 담당한 개인 사업주이자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 3층 외부비계에서 고임목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3층 외부비계 작업 현장은 높이 6.3m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 및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의 특성상 비계 작업발판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안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비계 작업발판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임목 설치 작업 도중 50cm 개구부를 통해 약 6.3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고였다.

[선고 내용] 징역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 유예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7고단1506 판결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서울메트로는 2011년도 및 2015년도에 J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J에게 부과하면서도 '스크린도어 장애신고 접수 시 1시간 이내 출동 완료, 고장접수 24시간 이내 미처리의 경우 지연 배상금 부과'등의 특약조건을 포함시켰다. 2015. 8. 29.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AF 선로측 사고(이하 'AF'사고)가 발생한 직후 서울메트로에서는 2011년 최초 A와 위 체결할 당시의 인력 설계로는 J정비원들의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2인 1조로 작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J정비원들은 선로측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부분 1인이 출동하여 서울메트로 전자운영실로부터 작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서둘러 스크린도어를 개방하고 선로측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J 소속 정비원 피해자 AE가 2016. 5. 28. 서울 광진구 AJ에 있는 지하철 2호선 'Z'내선(AK 방면) 승강장 9-4 지점 선로 내에서 2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혼자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던 중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위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이다.

[선고 내용] 피고인 A (하청 대표이사)징역 1년, 20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J(하청 법인) 주식회사 벌금 3,000만 원.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집행유예

2 산안법 위반 형사판례 선고 내용 요약 및 분석

위의 사례들에 대한 선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1번과 2번 사례는 산안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우리나라 평균 벌금형인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3번과 4번 사례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으며, 특히 3번 사례는 선고 내용에 유족과의 합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과의 합의를 형량의 감경이나 가중의 사유로 삼는다면 유족과의 합의는 가진자가 더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영세업자는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표 4 산안법 위반 형사판례 선고 요약

구 분	주요 위반 사항	위반 결과	선고 내용
1번 사례	절연보호구 미지급	감전 사망	회사와 현장소장 벌금 각 500만원
2번 사례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추락 사망	대표이사 벌금 400만 원
3번 사례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안전모 미착용	낙하 사망	징역 10개월(유족과 미합의)
4번 사례	안전대와 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	징역 6월, 1년간 집행유예
5번 사례	작업지침 미준수	충돌 사망	하청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하청 법인 벌금 3,000만 원

특히, 3번 판례는 대기업에게는 더욱 솜방망이 처벌의 가능성을 넓혀 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들어 왔고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 목숨 값이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현실성이 없는 가중사유로 여겨지고 산안법 위반은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실 자체에 객관적인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 5번 사례는 서울메트로가 원청이고 하청업체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하청 업체 소속의 19살 청년이 구의역에서 참변을 당해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으로, 하청 업체가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계약관계이지만 계약체결 당시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작업수칙에 규정되어 있는 2인 1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2인 1조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서울메트로 관계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위험을 외주 받은 하청 유지보수 업체 대표와 법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하청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19살 청년의 죽음으로 온 국민이 분노했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슈로 원청에 대한 원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번 판례에서 원청에게 어떤 형벌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익형량을 비교하여 이익이 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쉽게 버릴 수 없는 현실적인 유혹에 빠지게 하는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벌칙규정 주요 내용

1 산안법 주요 내용

지난 2019년 1월 15일 산안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안전·보건조치(제38조 또는 제39조) 미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산안법 제167조) 책임자를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하한선을 두고, 최고형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경영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누범규정만 두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만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이행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산안법 제169조)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처벌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실질적으로 개선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 처벌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 처벌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 처벌에서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하한형'을 설정했다는 점이 현행 산안법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시사점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이 산안법에 규정된 벌칙규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안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5년과 7년'이라는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최소 몇 년의 형을 받게 되는지 일 것이다. 내가 사형에 처해질지 여부는 다음의 문제이고, 벌칙의 상한인 사형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한이 선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경우는 매년 5건 미만이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온 일례들로 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하한을 설정 및 상한의 대폭 상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그리고 소송물의 확정이다. 소송물이 확정되어야 소송물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원고(사망자의 유족 등)는 즉시 확정되지만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피고(사업주 등)는 원청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정되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당사자인 화물차 기사 이모씨는 오전 10시쯤 태안화력본부 1부두 하역기 스쿠루를 반출한 뒤 정비하기 위해 해당 스쿠루를 트럭에 올렸다. 이후 이씨는 로프로 스쿠루 고정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2톤짜리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했다. 앞서, 태안화력의 상급 기관인 서부발전은 발전용 석탄을 운반하는 하역기의 컨베이어 스크루가 고장나자 ○○기공이라는 외부 정비 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기공은 스크루 운반작업을 다시 화물차 지입차주인 이씨에게 맡겼다. 즉, 특수고용노동자인 이씨는 형식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하청업체인 ○○기공과 계약을 맺는 관계다.[6] 이 사망사고에 대한 피고적격(피고인)은 누가 되는가? 사측의 입장에서는 화물차 기사 담당 업무여서 태안화력은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원고측에서는 원청인 태안화력에 어떤 논리로 대항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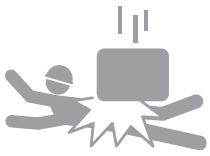

원청인 태안화력이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조치미이행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을 보면, 태안화력 측에서는 본인들의 책임 범위 밖의 사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이 주장을 명백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된 산안법에서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원청에서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포괄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당시에도 원청 사업장의 옥내외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사고에서도 원청은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만 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처벌의 하한을 설정하고 상한을 높이는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의 복잡성 증대와 고용형태 다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동 취약계층인 특수형태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6) 경향신문 김용균씨 숨진 태안 화력발전서 또 하청노동자 사망 (2020. 9. 11.)

또한, 날이 갈수록 산업은 다변화, 다층화되어 현재의 산안법 상 안전·보건조치이행 책임자를 확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책임 명확화의 일환으로 원청에 포괄적 장소 구속성 책임을 주장하고, 2인 1조 등 안전작업 조치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원청과 하청 관계를 떠나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입장만을 주장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부정적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면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하락하여 기업매출액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거처럼 산재은폐도 쉽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도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원·하청 및 고용형태를 떠나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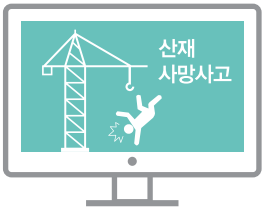

1981년 산안법이 제정된 이래로 수차례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산안법 벌칙의 상한은 이미 높여진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을 높이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선고형을 높이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임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양형기준상 산안법 위반 사건은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분류된다. 산재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이행 의무 소홀이나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에 기인하여 기업범죄 성격이 강함에도, 법원은 여전히 노동자 개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리하고 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이 6월~ 1년 6월에 불과해 개정 산안법의 법정형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현재 산안법의 미비점 보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 중 도입 가능한 부분은 흡수하여 벌칙 규정의 하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용형태 및 원·하청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조치이행 책임을 원청도 부담하는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진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
» 경향신문 김용균씨 숨진 태안 화력발전서 또 하청노동자 사망 (2020. 9. 11.)
» KBS 일하다 죽는 사람들..“산업재해는 기업범죄”(KBS, 2020. 9. 16.)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 7834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 7834 판결